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국에스지증권㈜

2. 조치일 : 2026. 8. 18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개선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정보교류차단 관련 업무 강화

(가) 임직원 교육 강화

금융투자업자는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하지만 한국에스지증권㈜은 2021.12월~2023.12월 기간 중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교육하면서 위탁매매 부문 및 자기매매 부문간 정보교류차단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<조치할 사항>

정보교류차단 관련 임직원 교육시 위탁매매 부문 및 자기매매 부문간 차단 의무 내용을 포함하고, 회사가 정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.

(나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지정

한국에스지증권㈜은 내규 「내부통제기준」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
하지만 2021.5.20.~검사종료일(2024.7.19.) 현재까지 위탁매매 부문 및 자기매매 부문의 정보교류차단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<조치할 사항>

위탁매매 부문 및 자기매매 부문의 정보교류차단 책임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.